C - 93 - 2013





<그림 3> 구명동의함 및 구명환 비치

- (6) 우물통기초 공사 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비 관련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 - (가) 바지선과 예인선의 부딪힘, 근로자의 끼임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타이어 등의 충격흡수재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나) 장비 간 고정을 위한 로프를 찾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- (다) 비상시에 선박 고정용 로프를 절단할 수 있는 도끼나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- (라) 반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하역작업은 중량 및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역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
 - (마)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야 하며 신호는 장비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.
 - (바) 수상 장비 조종원은 유자격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실명제를 실시하 여야 한다.
 - (사) 인양 크레인, 크람쉘, 배치플랜트 등의 장비를 바지선에 반입할 경우에 는 해당 장비이력카드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등의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